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 (2021.12.2. 시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체제 결정사항과 기업수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I. 주요 개정 사항

#### 1.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및 세분화

- 현행 전략물자 수출지역 '나 지역'을 나의1·나의2 지역(UN지정 수출 우려국가)으로 구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국제적 합의사항을 고려하여 세분화(현재 3개→4개)

현 행	개 정 안
<p><b>제18조 (수출허가의 지침)</b></p> <p>①·② (생 략)</p> <p>1. (생 략)</p> <p>2. 별표 6 제1호 가 목 중 가의2 지역(이하 "가의2 지역"이라 한다) 또는 나 목 중 나 지역(이하 "나 지역"이라 한다)으로의 수출허가시 신청품목의 최종 사용용도와 사용장소가 표시되고, 제1호에 규정된 활동에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수출허가 신청품목(장비, 물질, 관련기술 또는 복제품 등)이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원자력 관련 비확산체제의 회원국이 아닌 지역으로 재수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서류(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로 같음)를 최종사용자로부터 확보하여야 한다.</p>	<p><b>제18조 (수출허가의 지침)</b></p> <p>①·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별표 6 제1호 가 목 중 가의2 지역(이하 "가의2 지역"이라 한다) 또는 나 목 중 <b>나의1 지역 또는 나의2 지역(이하 각각 "나의1 지역", "나의2 지역"이라 한다)</b>으로의 수출허가시 신청품목의 최종 사용용도와 사용장소가 표시되고, ----- ----- ----- -----</p>

## 2. 사후보고를 사전신고와 병행 운영

- 수출허가 면제품목(전시회 물품 등 수출 후 사후보고)의 수출거래보고 시 기관·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사후보고를 사전신고와 병행 운영

현 행	개 정 안
<p><b>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b></p> <p>①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다만,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각 호는 최종목적지 국가가 수단, 시리아, 북한 중 한 곳이거나, 이들 국가 중 한 곳을 경유 또는 이들 국가 중 한 곳에서 환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p> <p>1. ~ 15. (생 략)</p> <p>② 제1항의 경우 수출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호에서 수입 당시 해당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인수했던 자와 반송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반품처가 당초 수출국과 다른 나라에 소재할 경우에는 당초 수출자가 지휘·감독하고 있는 반품처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를 면제한다. <b>〈단서 신설〉</b></p>	<p><b>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b></p> <p>① ----- ----- ----- <b>나의2 지역에 해당하거나, 나의2 지역</b> ----- -----</p> <p>1. ~ 15. (현행과 같음)</p> <p>② ----- <b>수출전 별지 제1호의4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 이내</b> ----- ----- -----</p> <p>③ ----- ----- ----- <b>단, 수출전 별지 제1호의4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 이내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b> -----</p>
<p><b>제53조(중개허가의 대상)</b></p> <p>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중개허가가 면제되는 경우 중개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9조에 의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은 중개자는 별표 1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정기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p>	<p><b>제53조(중개허가의 대상)</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b>수출 전 별지 제1호의4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 이내에</b> ----- ----- -----</p>



## 5. 기술수출 허가 유효기간 변경

- 기술수출 허가 유효기간을 수출계약서의 기간 → 원칙1년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개별수출허가의 유효기간)</p> <p>① 전략물자의 개별수출허가 유효기간은 1년(다만, 서면 계약에 따라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수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lt;단서 신설&gt;</p>	<p>제25조(개별수출허가의 유효기간)</p> <p>① ----- <b>1년으로</b> 한다.</p> <p>② -----</p> <p>----- <b>대금결제기간, 기술수출계약서상의 계약기간</b> ----- . 단, 수입국이 <b>나 의 2 지역</b>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b>1년</b>을 초과할 수 없다.</p>

## II.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2012.12.2.)부터 시행함

다만, 제50조제3항,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안은 이 고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28차 개정 전문

[붙임2]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 및 신규대비표

[붙임3] 제28차 수출입고시 별표별지

## | Contact



강민주 관세사

T 02-6011-3073  
E mjkgang@esein.co.kr



이하나 관세사

T 02-6011-3035  
E hnlee@esein.co.kr



전소연 관세사

T 02-6011-3101  
E syjeon1@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1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